



## Y2K 문제의 법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우

### 1. 서 론

Y2K 문제는 연원적으로 볼 때 1960년대 중반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비용 문제로 여섯 자리의 연도·날짜 표기법을 사용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정보산업은 근원적으로 Y2K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Y2K 문제는 순수한 민사법적·경제적 문제이다. 그러나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컴퓨터 시스템에의 의존도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Y2K 문제는 국가적·전세계적인 문제로 비약하게 된 것이다.

Y2K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관련법을 기준으로 크게 사법상의 문제, 공법상의 문제, 섭외사법상의 문제 및 국가·정부의 책무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제 2,000년을 불과 7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는 Y2K 문제를 해결하는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살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품의 구입단계에서부터 문제인식, 영향 평가, 변환, 검증, 인증 그리고 그 이후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법적 문제는 그 적용범위과 판례에 따라 해결방안과 결론이 결정되는 것임으로 국내외 입법동향과 소송동향도 함께 고찰한다. 또한 실제 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분쟁 또는 향후 소송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불공정계약의 문제도 다룬다.

Y2K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정보는 제작자 또는 공급자측이 전적으로 가지고 있고

사용자는 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Y2K 문제와 관련된 법적인 사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서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기술적 해결과 지속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술적 해결비용과 향후 미해결에 따른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법적인 문제이다. 여기서 법적 문제를 고찰하는 이유는 법적 분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는 데에 있으며, 공급자측의 책임소재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 2. 국내외 Y2K 입법 동향

#### 2.1 국내의 입법 동향

Y2K 문제와 관련한 국내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조치로서 각종 지원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 다양한 입법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며, 이러한 차이는 영미법계의 특성과 미국이 연방국가라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조치로는, 다수기관 사용 연도관련 코드/번호체계 개정사항 마련, 10대 중점관리부문의 선정과 국가사회 전반의 Y2K 문제해결 추진실태 평가(정보통신부), 공공기관 2000년 문제해결 제품 구입 의무화 조치, 중소기업 Y2K 해결 촉진을 위해 각종 정책자금 지원 시 Y2K

해결 고려(중기청), Y2K 해결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의 실시, 정보통신부에 Y2K상황실 설치·운영 등이 있다. 국회의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Y2K 문제와 관련한 예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아직 정식 입법안으로 제안되지는 않고 있다.

## 2.2 외국의 입법 동향

외국의 입법준비 사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1) 공동조사·협력에 관한 법률안, 2) 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안, 4) Y2K 문제의 조속한 해결 강제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으로는 「2000년 정보 및 준비」 공개법」(Year 2000 Information and Readiness Act, 1998.10.29[S.B.2392])과 「소규모 사업자의 2000년 준비에 관한 법」(Small Business Year 2000 Readiness Act, 1999.4.2)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주법으로는 캘리포니아주의 「2000년 문제 정보 공개 책임법」(Liability Disclosure of Year 2000 Information)이 시행 중이며, 1998년에 제정된 주법은 대부분 주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소송 제한에 관한 법으로서,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하와이주, 네바다주에서 각각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S.B.1173, H.B.1295, H.B.3619, S.B.638, S.B.3043, S.B.180, S.B.2303).

현재 진행중인 Y2K에 관한 미연방입법으로는 「Y2K 공정행위 및 책임에 관한 법」(99.2.24, 상원법사위 회부), 「2000년 준비 및 책임에 관한 법」(99.2.12, 하원 법사위 회부), 「Y2K에 관한 정부지원법」(99.1.19. 상원 법사위 회부), 「2000년 소비자보호법」(99.1.6, 하원 법사위 회부), 「Y2K법」(99.2.9, 통상위원회 심의 중), 「Bug Act-Businesses Undergoing the Glitch Act」(99.1.6, 하원 재정위원회 회부), 「Y2K에 관한 정부지원법」(99.3.2, 하원 정부개혁위원회 회부), 「2000년 새해에 관한 의안」(99.1.6, 하원 정부개혁위원회 회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2000년 소비자보호법(안)」(Year 2000 Consumer Protection Plan Act)은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라 제기되는 민사소송(연방

정부, 주정부나 공공단체가 Y2K 문제에 관한 오류나 오작동에 의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는 제외) 및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중재 절차에 적용되며, Y2K 소송이 접수되면 법원이 이를 강제증재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Y2K 문제와 관련된 오류로 인하여 예상 가능한 손실이 야기된 점, 피고의 작위나 부작위가 그 상황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그 손해는 대체로 피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를 감독함에 있어서 적절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때에만 책임을 지며, 동 소송을 2000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서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Y2K에 관한 정부지원법(안)」(Y2K State and Local GAP Act of 1999)은 통상장관이 주정부 및 그 소속 지방정부가 프로그램의 Y2K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의 복지프로그램의 Y2K 문제 해결과 관련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Y2K 공정행위 및 책임에 관한 법(안)」(Year 2000 Fairness and Responsibility Act, S.461)과 「2000년 준비 및 책임에 관한 법(안)」(Year 2000 Readiness and Responsibility Act, H.R.775)은 Y2K 소송의 발생을 줄이고 잠재적 Y2K 책임을 제한하여, Y2K 문제에 관한 구제책을 강구하도록 기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 2.3 소송동향

국내에서는 아직 Y2K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바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Y2K 문제 해결 비용의 부담 또는 해결프로그램의 무상제공에 관한 소송이다. 일부 법안의 경우에는 1995년 이후의 제품구입전에 관하여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가 무상으로 해결하여 줄 것을 규정하기도 하며, 이러한 분위기는 실제 소송에서도 공급자측이 인정하고 있는 추세

이다.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는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굴복하여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아직 Y2K로 인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된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불공정 상행위」를 소송이유로 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99년 1월 27일)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은 Intut사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5개의 소송원인에 관한 피고의 이의신청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청구수정을 인정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측에서 「불공정 상행위」를 추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특히 불공정 상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입할 때에만 Y2K 문제가 해결된 소프트웨어를 받을 수 있다고 Intut사가 표현했거나 혹은 업그레이드 제품만이 유일한 구제수단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공급사측의 과대한 해결비용의 요구나 불필요한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요구에 대하여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최근의 소송으로서 Modern Drummer Publications, Inc. versus Lucent Tech., Inc.(99.1.29) 소송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다. 동 사건에서 원고는 뉴욕주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상품성의 보증의무 위반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즉, 원고측은 AT&T와 Lucent Tech., Inc.회사가 90년 이후에 자사의 통신제품의 Y2K 문제를 해결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순응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를 두 회사가 Y2K 문제를 가지고 있는 통신제품을 수리하거나 교환하여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향후 이러한 집단소송이 많이 제기될 전망이다.

### 3. Y2K 문제 해결과정상의 법적 쟁점

Y2K 문제와 관련된 입법이나 소송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Y2K 문제는 계약법상의 당사자간 문제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제품의 구입당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구입 이후의

문제인식단계, 해결단계, 해결(2000년) 이후의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법적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3.1 구입단계

제품구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우선 계약상의 Y2K 관련조항에 관한 것이다. 계약체결 시에 당사자가 Y2K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우선 쟁점사항이 된다. 아울러 제품에 대한 성능의 보장 속에 Y2K 문제에 대한 순응 내지 해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Y2K 문제로 인한 시스템의 중단 또는 오류에 따른 손해의 배상문제나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도 문제가 된다.

##### 3.1.1 공급자측

공급자측에서는 Y2K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및 인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인식한 경우 사전에 고지하였는지의 여부, Y2K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더라도 2000년 이후의 제품성능에 대하여 보장을 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인식할 수 있었거나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체결사의 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성능을 보장한 경우에는 당연히 무상 업그레이드를 행하여야 한다. 계약당시에 존재하는 Y2K 문제에 대하여 구입자(이용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공급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무과실책임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다(민법 제580조, 제581조). 이 매매에 관한 규정은 도급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 3.1.2 구입자(이용자)측

구입자측에서도 계약당시 해당 제품에 대하여 Y2K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겉수 당시에 발견할 수 없었는지, 발견하고도 통지를 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또한 Y2K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일반적, 통상적 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체결하였는지, 문제 발생에 대하여 면책을 협용한 것인지 등이 관건이 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면책약관의 존재가 이에 해당한다.**

상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특칙이 적용되므로 하자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Y2K 문제의 존재를 몰랐던 공급자측에 대하여 계약해제, 대금감액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69조). 단 계약상의 완전 이행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6개월의 기한이 적용된다.

면책약관이 일방적으로 이용자측에 불리한 경우 즉, 상당한 이유없이 공급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이용자가 담보책임을 물기 위한 권리의 행사요건을 가중하는 경우, 견본 또는 물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에 의하여 보장된 내용상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된다(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 3.1.3 유지보수계약 등의 개별계약상의 책임

중요하거나 고가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구매계약과 별도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일반적인 유지보수계약은 서비스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표준조건과 서비스조건 및 부속명세서에 기재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양호한 운영상태로 유지하며 정비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유지보수 계약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량, 수정, 최신판의 제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Y2K 문제를 예상하여 포함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예상과 관계없이 포함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해석이 필요하다. 포함되는 경우, 이용자측에서는 Y2K 문제의 해결비용이 유지보수비로 분산되며, 관련 데이터의 수정비용이 별도의 부담으로 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3.2 문제확인 단계

이 단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Y2K 문제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과 이에 대한 응답 또는 응답거부에 따른 법적 문제이다. 현재 외국의 경우에는 Y2K 문제가 존재하는지, 해결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이고, Y2K 정보공개법에 의

하여 관련 사항을 공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확인은 제품의 구입자 뿐 아니라 Y2K 문제가 의심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와 거래 등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일반인 내지 단체에서도 요청한다.

확인요청의 효력을 법적으로 보면 공급자가 하자있음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용자가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부담이 될 것이다.

확인요청에 대한 응답의무에 대해 법적으로 직접 규정한 바는 없다. 다만,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될 뿐이다. 현재 외국기업이 우리 업체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성실한 응답이나 응답거부에 따른 거래중단 가능성 등의 경고문을 첨부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확인응답의 효력에 대한 법적 문제는 응답내용에 따르게 되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응답한 경우에는 사기 또는 고의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확인여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되는데, 상사매매의 경우에는 하자발견의 통지의무가 있고 계약체결상의 과실문제에서는 공급자의 신의칙상 통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확인요청을 무시한 경우는 일단 Y2K 문제가 있음을 추정하는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바, 공급자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다. 반면에 확인요청자의 입장에서는 그 제품 또는 프로그램의 사용에 따른 Y2K 피해를 회피할 의무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과실상계에 반영된다.

## 3.3 해결단계

### 3.3.1 해결책임

Y2K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거나 공급자로부터 Y2K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받은 후의 문제는 누가 해결책임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해결비용의 부담문제와 해결과정

중에 발생하는 업무의 중단 또는 시스템 중단 등에 의한 손해의 배상문제로 연결된다.

해결책임자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최초 도입 계약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된다. Y2K 문제에 대한 명시적 보증이나 묵시적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공급자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특히 영미국가 계열의 외국회사 경우에는 이러한 보증책임의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인 기술력의 우위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내 이용자에게 사실상 강제하거나, 국내 이용자의 법적 전문성이 부족한 점 또는 계약서 내용보다는 상대방의 명성이나 관계자 개인의 친분 등에 더 많이 의존하는 관행을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매매나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6개월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게 되고, 이 기간(권리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보호법상의 보증기간인 1년도 사실상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아직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공급자측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나 소비자보호법상의 보증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필자가 한국법제연구원의 Y2K 법률정보센터를 통하여 상담한 사례를 보면, 중간 공급대리상 또는 대리점이 계약이나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회사 특히 외국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모두 Y2K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Y2K 문제의 해결책임에 관한 계약서 내용의 해석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 질의 하여도, 회신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또는 회신한 부처에 따라 견해가 다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소송상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성이 많다고 하겠다.

도입계약 등과는 별도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내용상에 Y2K 문제의 해결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해결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계약

기간 내에 시스템의 완전한 성능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Y2K 문제에 관한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책임이 인정된다. 별도의 하자보증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하자보증계약의 해석문제로 이어진다.

현재 Y2K 문제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증 등에 있어서의 '물건의 하자'에 해당되며, 소비자보호법이나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학설상 인정되는 불완전이행에도 해당한다. 아직 2000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직접 물건의 이용 등에 영향을 미쳐 손해를 발생하지는 않지만, Y2K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급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며, 또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게 예견된다는 점에서 공급자측에 대하여 하자를 제거할 책임이 발생한다. 이는 손해배상의 문제와는 양립하는 문제이며, 계약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계약내용에 따른 완전한 급부 제공의 의무 및 손해발생예견과 방지의무와 결합된다.

시스템의 도입은 매매에 의한 경우와 리스계약에 의한 경우 및 렌트에 의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리스계약에 의한 경우는 임대차와 다른 법률관계로 보아, 면책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불리한 면책약관 무효조항의 적용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리스계약에 면책약관이 첨부되는 거래 관행으로 볼 때, Y2K 문제에 관한 한 이용자에게 불리한 형편이다. 유지보수계약이 함께 체결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면책약관이나 손해배상액의 제한조항 등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렌트의 경우는 임대차로 본다.

### 3.3.2 SI업체에 의한 해결

현재 상당수의 이용자가 Y2K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적 기술력의 부족과 공급업체의 비협조 등 때문에 SI업체에게 해결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로, Y2K 문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및 해결비용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 즉, 이미 Y2K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2000년

이 도래하더라도 손해의 발생은 없게 된다. 설사 공급업체가 Y2K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치유할 기회를 이용자측에서 박탈하였기 때문에 해결비용의 상환이나 동의가 없는 프로그램 등의 수정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임없음을 환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SI업체를 통한 해결은 이용자가 공급자측의 책임임없음을 인정한 증거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SI업체를 통한 해결에 따른 두 번째 법적 문제는 해결비용 금액 자체에 대한 다툼이다. 해당 제품 등에 대한 기술력과 Y2K 정보에 관하여는 공급업체가 가장 정통하다는 것은 일단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SI업체에 의한 해결방법의 비경제성 내지 과다비용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마땅한 환변을 제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측에서는 SI업체에 위탁하여 해결하기 전에 해결책임이 있는 공급자측에 대하여 Y2K 문제의 확인 및 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강제이행의 한 방법으로 SI업체에 의한 해결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급자측에서 2000년이 도래하기 전에 해결을 약속하고 계속 지체하는 경우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SI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SI업체가 Y2K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2000년이 도래하였을 때 시스템의 오류나 동작중단 등의 Y2K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 소재와 배상액 산정이 간단하지 않다. 해결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해결계약상에 일정한 채무한계와 면책조항을 둔 경우(예컨대 무사히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을 인정하는 내용을 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공급자측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의뢰자인 이용자측에서 SI업체의 기술력 한계로 인한 Y2K 손해발생에 대하여 불가항력사유로 용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면책 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이 SI업체와 원공급자 및 이용자간에 발생할 것이다.

### 3.3.3 자체 해결

공급자측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해결시일의 촉박 등의 사정에 의해 법적 고려 없이 이용자가 자체 해결을 추진한 경우에는 나중에 해결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자체해결은 이용자측이 공급자측에 대하여 체무면제 내지 책임면제를 하여 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경우 Y2K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것이 원래의 Y2K 문제로 발생한 손해인지 또는 자체해결에서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급자측으로부터 유상으로 업그레이드를 받거나 신제품 등으로 교체한 경우는 물론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임의로 수정한 경우에는 프로그램보호법상의 저작권침해문제도 제기될 수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침해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자체해결이든 SI업체에 의한 해결이든 반드시 문제조사 결과와 해결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다.

## 3.4 해결이후 단계

### 3.4.1 인증제도와 인증의 효력

인증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에 Y2K 문제가 없거나 이를 해결하였다는 사실을 제3의 기관에서 확인 내지 겸증하는 제도이다.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최근 관련협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은 Y2K 문제의 해결과정 및 그 결과를 서면 심사로 확인하는 경우와 실제 테스트과정을 거쳐 확인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중간형태로서 현장테스트는 샘플테스트를 행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로 서면상의 심사와 확인으로 행하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증받은 시스템에 Y2K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이는 인증제도가 어떠한 형태인가에 따라 또한 인증계약에 따라 다르게 된다. 현재 국내의 관련협회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는 인증에 대한 어떠한 법적 효력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은 인증을 권고하거나 이를 대출 조건으로 삼고 있고, 정부도 각종 Y2K 해결촉진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를 권장하는 입장에 있다. 해당 기업은 인증사실을 기업의 공신력 제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사실을 신뢰한 일반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인증기관의 법적 책임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남아 있다.

국내에서는 각 대기업별로 내부적인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부처에서도 자기인증선언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도 보유시스템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인증을 받은 사실은 일단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는 향후 손해배상의 문제에 있어서 감면사유가 될 수 있다.

### 3.4.2 손해의 발생과 보험

2000년이 도래한 후 또는 그 이전에 Y2K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보험제도는 현재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보험협회에서는 Y2K보험을 도입할 계획이 없고 Y2K 문제가 손해배상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선언한 바 있다. 인증을 받은 시스템에 대한 Y2K보험 도입문제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의 실현가능성은 비교적 적다. 그 이유는 보험료의 계산이 곤란하고 한시적인 보험상품이기 때문이다.

### 3.5 기타 법적 문제

Y2K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의 책임문제 외에 기업의 임직원에게도 내부규정이나 회사법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시스템 도입관련자, 해결업무 관련자, 임원 등에게 회사의 손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내부적 직무상 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Y2K 문제로 인해 고객

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 행위책임이 회사(시스템보유자)에게 인정될 수 있다. 만약 공급자측에 해결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구상권의 행사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Y2K 문제가 있는 시스템의 오작동에 의한 데이터의 오류 또는 계산오류에 의한 손해는 공급자측에게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이다.

국내 시스템 보유자들이 Y2K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공급업체 또는 제작자로부터 과다한 비용을 요구받거나, 불필요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내지 신제품 구입을 요구받거나, 외국업체가 악의적으로 해결을 회피하는 등의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금지불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불법원인급여나 비채변제의 문제가 된다.

## 4. 결 론

정부가 선정한 13대 중점점검대상에 해당하는 분야의 시스템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사용자의 주의의무 및 설명·고지의무와 관계되고 공공서비스 내지 공익적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문제가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등을 구입·운용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자, 담당관리자 및 관련 종사자들의 책임이 함께 문제가 된다.

Y2K 문제는 전세계적인 공동 협력을 통해 대처하여야 할 현안이지만, 기본적인 성격이 계약법상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급자측의 고의적인 방치나 해결거부 등의 문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이용자의 임의적 자체 해결에 따른 분쟁, 국제적 거래의 형태에 따른 불공정한 역내외 차별적 해결문제, 미해결시에 국가가 행할 비상계획 및 비상조치에 따른 손실의 감수나 보상의 문제가 향후 2000년 이후의 중요한 분쟁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조정에 의한 원만한

해결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 준 우

1978 단국대학교 법학과(법학사)  
1980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법학과(법학석사)  
1989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법학과(법학박사)  
1990~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강사.  
1991~1998 한국법제연구원 수석  
연구원  
1998~현재 한국법제연구원 법제  
조사연구2팀장, 연구위원  
관심분야: 불법행위책임법, 범인재  
도, 정보화사회의 법적  
문제

E-mail: ranjun@cholhan.net

## '99 주요행사 연간일정표

월 별	주 요 행 사		
	행 사 명	일 시	장 소
3월	Y2K 해결을 위한 호남지역 워크숍	4일(목) 14:00	광주대학교
4월	Y2K 해결을 위한 충청지부 워크숍	16일(금) 14:00	한남대학교
	제26회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23일(금)~24일(토)	목포대학교
5월	Y2K 해결을 위한 영남지역 워크숍	28일(금) 10:00~12:30	부산대학교
6월	제12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 행사	3일(목) 14:00	전북대학교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움	29(화) 13:00	과학기술회관
7월			
8월			
9월			
10월	제26회 정기총회 추계학술발표회	22일(금)~23일(토)	광운대학교
11월			
12월	제17회 정보산업리뷰심포지움	10일(금) 13:00	코엑스
	1999년도 학회 송년회	10일(금) 18:30	무역크럽